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의 요약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배당수입×80% 혹은 100% 등을 익금불산입함.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① 원칙 :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주식의 출자비율 80%(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의 경우 40%)를 기준으로
 - 기준비율을 초과하면 : 수취배당액의 100%를 익금불산입하며,
 - 기준비율 이하시 : 수취배당액의 80%를 익금불산입함.
 - ② 예외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자 관련금액만큼을 익금불산입 계산금액에서 제외(차감)함(다음 금액 차감한 금액만 익금불산입).
 - 지주회사가 금융차입금 보유시 : 차입금 지급이자×(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100% 및 80%÷자산총액)을 익금불산입 해당액에서 제외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및 타법인(1% 초과)에 출자시(일종의 연결·중복출자임) : 수취배당액×익금불산입율(100%, 80%)×(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주식 등 장부가액)을 익금불산입 해당액에서 제외함.
- 지주회사의 요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법인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설립 전환의 신고기한이 미도래한 법인이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함).
- 자회사의 요건은 첫째, 지주회사가 내국법인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20%, 벤처기업은 20%) 이상을 직접 보유하여야 하며, 둘째,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증기주식은 배당기준일 현재로 판단)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셋째,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 배당기준일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금
 - 일반법인이 유통화전문화사 등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명목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 100% 감면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 비과세가 적용되는 배당
 -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 법인세신고시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1.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개요와 절차

①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요건 및 계산산식 개요 (제1항)

세법상 지주회사가 규정상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액 (=㉠+㉡-㉢-㉣)만을 익금불산입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적용한다.

㉠ 자회사주식의 80%(주권상장은 40%) 초과 보유 : 수입배당액×100% 익금불산입(2008년은 90%)

㉡ 자회사주식의 80%(주권상장은 40%) 이하 보유 : 수입배당액×80%(2007년은 70%) 익금불산입

㉢ 자회사주식 100% 보유 : 수입배당금액×100% 익금불산입

㉣ 지주회사의 지급이자 해당액 비율 제외 : 지급이자×(차입금/자산총액)

결국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할 금액=(㉠+㉡)-(㉢+㉣)

(㉠와 ㉡의 합계액이 ㉢와 ㉣합계액보다 적으면 익금불산입할 금액은 없음)

②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이유와 이중과세 배제

경제력집중 억제 등과 관련하여 1979년 1월부터는 일반법인이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않고 익금산입으로 전액 과세해 왔다. 그러나 1980년 1월부터는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수취배당액의 90%를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1996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액을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1987년부터 금지해 오던 지주회사의 설립이 99년 4월부터 허용되었는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인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후 배당액에 다시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수입배당소득에 대한 연속적 이중과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는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개인 주주의 경우 수입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조정(배당소득 총액화 가산후 배당세액 공제적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99년말의 법인세법 개정시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③ **익금불산입계산 방법내용 : 수입배당액×100% 혹은 80% 익금불산입-지급이자나 연결출자관련 불이익계산액 (제3항)**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80%(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는 40%)를 기준으로 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기준비율을 초과 출자하면 수취배당액의 100%를, 기준비율 이하 출자시에는 수취배당액의 80%를 각각 익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차입방법으로 자회사 출자하는 것을 규제하고, 자회사가 다른 계열법인이나 타법인 연결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차입금지급이자 연결출자액 관련 일부 금액은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한다. 이는 건전한 지주회사의 육성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수입배당금액×100% 전액 혹은 80%의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공제함으로써 익금불산입규모를 축소한다.

④ **지급이자 있는 경우 해당 비율액은 익금불산입에서 차감**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차감(과세혜택 제외액)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 계산산식 :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할 금액=차입금 지급이자(해당 자회사 대여금 상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제외)×(자회사주식 등의 장부가액×100% 혹은 80%÷자산총액(해당 자회사 대여금 제외))

여기서 지급이자 및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금이자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나 그 차입금은 제외한다. 자산총액은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또한 주식 등의 가액과 자산총액은 모두 적수로 계산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⑤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 (2008. 2. 22 개정)

2.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합계액×100분의 80 (2008. 2. 22 개정)

3. 해당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⑦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2009. 2. 4 개정)

⑤ **자회사가 계열사 연결출자시 해당 배당액을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폐지됨**

자회사가 계열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하여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을 폐지하고 2009. 1. 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는 이중과세조정으로 특정법인이 법인세를 낸 후의 배당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100% 법인세를 감면받아 법인세가 아예 과

세되지 않거나 당해 배당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배당되어 익금산입되더라도 추가 법인세의 이중과세문제가 없으므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한다.

-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금
- 일반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명목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 지방이전기업 감면 등 100% 감면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 창투자 등이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등 비과세가 적용되는 배당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⑪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2009. 2. 4 신설)

⑦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3개월 이상 보유 요건 (제2항)

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서 받는 배당소득의 일부 익금불산입 적용하려면 실질적 자회사 관계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의 포트폴리오·분산투자 등이 아니어야 하는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그러니까 주권거래 폐쇄일·결산일 2~3일전 등, 원칙적으로는 각 자회사 법인의 결산기말인 12월 31일 등임)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결산기말이 12월 31일인 경우라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지분취득한 경우만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이라는 본 조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평소는 다른 회사의 자회사로 있다가 연말에만 지주회사 취득으로 변경·이전하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적용혜택을 받으려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일반 80% 여부, 상장·코스닥법인 등 40% 여부 판단은 배당기준일(주로 12월 31일 기준)의 3개월 전인 9월 30일까지 보유한 지분비율로만 판단하며 3개월내 추가취득한 주식지분관련 배당소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이미 부여한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이 자회사 편입된 이후에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3개월이 아니고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때 주식수의 계산방법은 동일종목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7조의2【지주회사의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이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⑩ 제3항 및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⑧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제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회사는 법인세신고서에 수입배당금명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⑨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서 식】**

16의2. 영 제17조의2제9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2009. 3. 30 개정)

II.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범위 및 요건

① **지주회사의 범위 및 세법상 지주회사 신고법인을 말함**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 적용받으려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포함)이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각 기업이 지분연결관계에서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은 일종의 혜택이므로 지주회사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법인으로 한정하였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신고에서 신설법인이나 합병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이나,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및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후 4월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도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까지만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라면 지주회사로 보아 조세지원혜택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②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개념**

지주회사란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관련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2. 12. 8 개정)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2007. 11. 2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2007. 11. 2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007. 4. 13 개정) 가.~다. 삭 제 (2004. 12. 31)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8. 3 개정)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007. 8. 3 개정)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007. 8. 3 신설)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8. 3 개정)

-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2004. 12. 31 단서신설)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2004. 12. 31 단서신설)

③ 자회사의 범위 및 요건

자회사란 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 제2조의1의3호)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 시행령은 자회사란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40%(주권상장법인, 벤처기업은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보통 12월 31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009. 2. 4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가.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2000. 12. 29 개정)

④ 자회사 범위에 대해 법인세법과 공정거래법과의 차이점 비교

자회사의 범위에 대해 법인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회사가 코스닥상장법인이라면 주권상장법인과 같이 지주회사의 출자비율을 20% 이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40% 이상)으로 낮춤. 이는 세제상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임.

둘째, 현물출자 방법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40%(일반법인) 및 20%(주권상장법인)에 미달하더라도 2년간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함.

셋째, 출자비율 계속유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출자비율 계속유지기간에 대하여 자회사의 배당기준일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음.